

# 2015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

## I . 세입·세출결산 총괄

### □ 세입결산 총괄

- 2015 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17억 1천 8백만원, 징수결정액 655만원, 실제 수납액 655만원으로, 예산현액 대비 0.4%, 징수결정액 대비 100%를 수납하였음.
- 특별회계는 없음

(단위: 백만원)

회 계 별	예산현액	징수결정액	실제수납액	징수율(%)	미수납액
계	1,718	7	7	100	-
일반회계	1,718	7	7	100	-

### □ 세출결산 총괄

- 세출결산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15억 8천 7백만원 중 11억 7천 4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, 2억 3천 8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. 집행잔액은 1억 7천 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%임
- 특별회계는 없음

(단위: 백만원)

회 계 별	예산현액	지출원인행위액	지 출 액	다음년도이월액	집행잔액	불용률(%)
계	1,587	1,412	1,174	238	175	11
일반회계	1,587	1,412	1,174	238	175	11

## Ⅱ . 회계별(일반회계) 세입·세출결산

### □ 세입결산

-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(경상적세외수입, 임시적세외수입)과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, 세입 예산현액은 17억 1천 8백만원이며, 징수결정액은 655만원, 실제 수납액 655만원으로, 예산현액 대비 0.4%, 징수결정액 대비 100%를 수납하였음.

(단위: 천원)

구 분	예산현액	징수결정액	수 납 액	징수율(%)	미수납액
계	1,718,050	6,549	6,549	100	-
세 외 수 입	1,318,050	6,549	6,549	100	-
경상적세외수입	-	13	13	100	-
임시적세외수입	1,318,050	6,536	6,536	100	-
국 고 보 조 금	400,000	-	-	-	-

### □ 세출결산

-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5억 8천 7백만원으로, 이중 11억 7천 4백만원을 지출하고, 2억 3천 8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, 예산현액 대비 11%에 해당하는 1억 7천 5백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처리됨.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예산현액	지출원인행위액	지 출 액	다음년도이월액	불 용 액
계	1,587	1,412	1,174	238	175
도시경관개선	642	573	439	134	69
행정운영경비	54	51	51	-	3
공공디자인 수준 향상	891	789	684	104	103

## □ 세출예산 집행관련

### 가. 예산이용 및 전용

- 예산이용은 없음.
- 예산전용은 총 1건, 1,800만원임.
  - 서울충괄건축가 운영(사무관리비 → 민간인국외여비) 1,800만원

### 나. 예산이체

- 예산이체는 총 24건, 74억 9,798만원임.
  -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1억 3,200만원  
(공공운영비, 도시공간개선단→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)
  -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12억 4,996만원  
(시설비, 도시공간개선단→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)
  -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5,000만원  
(감리비, 도시공간개선단→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)
  -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 350만원  
(시책추진업무추진비, 도시공간개선단→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)
  -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 15억 9,000만원  
(민간경상사업보조, 도시공간개선단→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)
  -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·확산 4,400만원  
(사무관리비, 도시공간개선단→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)
  -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·확산 2,200만원  
(행사운영비, 도시공간개선단→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)
  -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·확산 1,300만원  
(기타보상금, 도시공간개선단→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)
  - 국제도시 조명연맹 정책교류사업 1억 5,470만원  
(사무관리비, 도시공간개선단→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)
  - 국제도시 조명연맹 정책교류사업 1,100만원  
(국제부담금, 도시공간개선단→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)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 (사무관리비, 도시공간개선단→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)</li> </ul>	1,000만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소외·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(사무관리비, 도시공간개선단→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)</li> </ul>	500만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소외·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(시책추진업무추진비, 도시공간개선단→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)</li> </ul>	350만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소외·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(시설비, 도시공간개선단→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)</li> </ul>	20억 8,000만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소외·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(시설부대비, 도시공간개선단→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)</li> </ul>	1,000만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(사무관리비, 도시공간개선단→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)</li> </ul>	5,000만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(시책추진업무추진비, 도시공간개선단→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)</li> </ul>	500만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(시설비, 도시공간개선단→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)</li> </ul>	14억 1,000만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서울시 빛환경 관리계획 수립 (연구용역비, 도시공간개선단→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)</li> </ul>	1억 2,000만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관광활성화를 위한 야간경관 개발계획 (기타보상금, 도시공간개선단→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)</li> </ul>	1,300만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관광활성화를 위한 야간경관 개발계획 (시설비, 도시공간개선단→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)</li> </ul>	1억 8,700만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정릉 솔샘로 경관개선(주민참여) (자치단체자본보조, 도시공간개선단→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)</li> </ul>	8,000만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석촌동고분 경관조명 2차 사업 (시설비, 도시공간개선단→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)</li> </ul>	2억 5,000만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기본경비 (공공운영비, 도시공간개선단→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)</li> </ul>	432만원

#### 다. 예산변경

- 예산변경은 1건, 600만원으로 “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운영(사무관리비 → 특정업무경비)” 사업임.

#### 라. 다음연도 이월

- 명시이월은 총 3건, 총 2억 3,825만원임.
  -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(사무관리비) 1,470만원
  - 2016~2020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(연구용역비) 1억 1,909만원
  - 서울도시디자인 기본계획·재정비 (연구용역비) 1억 445만원
- 사고이월 및 예비비 사용 없음.

#### 마. 집행잔액

- 2015회계연도 예산현액의 11%인 1억 7천 5백만원이 집행잔액이며, 발생사유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.
  -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,055만원
  - 예산절감 274만원
  - 예산집행 잔액(낙찰차액 등) 1억 1,167만원

### Ⅲ. 검토의견

#### 1. 세입결산

- 2015 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세입결산결과, 특별회계 세입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7억 1,805만원, 징수결정액 655만원, 실제수납액 655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%를 수납하였으며, 예산현액대비 0.4% 수준임.
-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 과부족이 발생한 원인은 2015년 1월 1일 조직개편 이전 문화본부 공공디자인과에서 시행한 “디자인서울거리 한전 지중화사업”의 시비 회수금액<sup>1)</sup> 23억 7,900만원 중 13억 1,805만원(중량구)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, 조직개편 이후 세입은 도시공간개선단으로, 실제징수는 도시계획국(도시관리과)에서 수행하였기 때문임<sup>2)</sup>.
-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“건축아카데미” 수강료 이자수입이며, 임시적세외수입은 “건축아카데미” 수강료에 의해 발생하였음.
- 국고보조금의 경우 “주택가 빗환경 개선사업”을 위한 국고보조금 4억원을 수납하였으나, 조직개편 후 업무이관 부서인 도시계획국

---

1) 공사비 중 한전 부담금은 서울시가 선부담, 준공정산일 기준 3년 경과 후 30일 이내 해당 자치구가 한전에서 반환받은 후 서울시에 반납 조치하여 회수됨(한전 50%, 서울시 및 자치구 각 25%)

2) 디자인서울거리 지중화사업비 반환금 : 2,379,228천원(징수 :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)

- 중량구 반환분 (1,379,057천원) : `15년 회계 세입편성(1,318,050천원)
- 관악구 반환분 (990,748천원) : `14년 회계 세입편성, `15년 세입징수
- 서대문구 반환분 (9,423천원) : `15년 세입 미편성
- 총반환금 2,379,228천원 징수되어 도시공간개선단의 `15년 세입편성 예산액인 1,318,050천원보다 1,061,178천원 초과징수

도시빛정책과에서 징수하여 도시공간개선단의 세입으로만 반영되어 있는 것임.

(단위: 천원)

구 분	예산현액	징수결정액	수 납 액	징수율(%)	미수납액
계	1,718,050	6,549	6,549	100	-
세 외 수 입	1,318,050	6,549	6,549	100	-
경상적세외수입		13	13	100	-
임시적세외수입	1,318,050	6,536	6,536	100	
국 고 보 조 금	400,000			0	-

## 2. 세출결산

가. 예산이용 : 없음

나. 예산전용

○ 예산의 전용은 1건 1,800만원이 발생함.

- 이는 2015년 예산편성시 총괄건축가의 “민간인 국외여비”가 편성되지 않아 “서울총괄건축가 운영” 예산 중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을 전용하여 민간인국외여비를 확보한 것에 기인함.
- 총괄건축가는 2015년 총 2회 국외출장을 다녀왔으며, 이중 1,078만원을 사용하고 72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.

연번	국외출장 개요
1	일 시 : 2015. 5.15 ~ 29 장 소 : 러시아, 핀란드, 스웨덴, 노르웨이, 덴마크 목 적 : 선진건축문화 벤치마킹 및 현지강의 출장인원 : 총 23명(서울시 8명, 자치구 13명, SH공사 2명)
2	일 시 : 2015. 10. 18 ~ 21 장 소 : 일본(센다이, 도쿄, 구마모토) 목 적 : 일본 공공건축가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사례조사 출장인원 : 총 3명(도시공간개선단)

- 2015년 조직신설 및 예산편성 시 민간인국외여비를 미편성하여 필요에 따른 예산전용으로 볼 수 있겠으나, 국외출장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예산만큼만 전용하였다면 불용액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임.

- 예산의 이체는 총 24건, 74억 9,798만원으로 2015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에 기인한 것임.

#### 다. 예산변경

- 예산변경은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운영 예산 중 ‘사무관리비’를 ‘특정업무경비’로 변경한 것으로, 임기제직원의 증원에 따라 일부 변경한 것임.

#### 라. 예산이용 및 예비비 지출, 사고이월은 없음

#### 마. 다음연도로 이월 및 불용

- “2016~2020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”의 경우 사업비 2억 8,700만원 중 1억 1,909만원을 명시이월 하였는데, 이는 제2차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(2015~2020) 수립(2015년)에 따른 것임. 「건축기본법」 제12조<sup>3)</sup>에서는 시·도지사가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학술용역심의를 거쳐 2015년 해당 용역을 발주 할 예정이었으나, 제2차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됨

#### 3) 「건축기본법」 제12조(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)

- ① 시·도지사는 지역의 현황 및 사회·경제·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광역건축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필요한 경우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광역건축기본계획에 따라 시·군·구(자치구의 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초건축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

에 따라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계약은 2015년 10월 체결되어 명시이월은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음.

- 다만, 낙찰차액에 따른 불용액이 17%에 달하는 것은 2차례 유찰 및 수의계약 체결(계약금액: 2억 3,818만원)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, 최초 용역금액(예산책정액: 2억 8,700만원)의 과다 계상에 따른 예산 낭비, 기타 용역품질 저하 등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,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용역비 책정이 필요하겠음.

○ “기본경비” 불용액은 대부분 기관운영업무추진비(256만원)로서, 이는 지난 2014년 감사원의 서울시 기관운영감사(2014.11.17~12.12) 결과 본청 과장(4급)에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지급한 것은 “예산편성운영기준”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임.

○ “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”사업의 경우 총 2억 600만원 예산 중 15.2%가 불용 처리되었음. 이는 서울디자인클리닉이 인증제 탈락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, 인증제 합격률이 높아지면서 신청업체 수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임.

- 다만 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 사업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므로, 향후 예산편성 시 최근 5년간 불용률 추이, 인증제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음.

(단위: 만원)

연 도	예산액	집행액	집행잔액	불용률(%)
2011	30,600	26,006	4,594	15.0
2012	26,310	23,981	2,335	8.9
2013	24,000	18,307	5,693	23.7
2014	20,600	18,048	2,552	12.4
2015	20,600	17,470	3,130	15.2

○ “도시디자인기본계획 재정비 용역(학술용역)”의 경우 당초 1억 8천 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으나, 2회 유찰 및 수의계약(2015.7.6)에 따라 준공이 늦춰지게 되어 이월하게 된 것임.

- ‘건축기본계획 수립용역’과 같이 낙찰차액에 따른 불용액이 20%를 초과하는 것은 재공고 유찰 및 1인 수의계약에 따른 결과임.

(단위: 만원)

연번	사업명	예산현액	명시이월	집행률 (%)	이월액	이월률 (%)	불용액	불용률 (%)	불용 및 이월사유
1	서울시공공건축가 운영	5,500	1,470	72.6	1,470	26.7	35	0.6	• 준공기한 미도래 (15.10~16.2) • 집행잔액
2	서울총괄건축가운영	30,000	-	93.3	-	-	2,011	6.7	• 낙찰차액 및 예산집행 잔액
3	2016-2020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수립	28,700	11,909	41.5	11,909	41.5	4,882	17.0	• 국건축계획수립시기 이후 발주(10.7) 가능하여 50%이월 • 잔액은 낙찰차액
4	기본경비	5,372	-	94.1	-	-	316	5.9	• 감사원 서울시 기관운영감사결과 4급이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적에 따라 불용함
5	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운영	13,504	-	97.4	-	-	349	2.6	• 집행잔액
6	서울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 및 디자인서울클리닉	20,600	-	84.8	-	-	3,130	15.2	• 낙찰차액(6,000천원) 및 사업산정업체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(25,297천원)
7	서울도시디자인기본계획재정비	18,000	10,445	21.1	10,445	58.0	3,755	20.9	• 조작성편, 조례개정 등의 변화에 대한 방향감토 및 유찰에 따른 계약기간 소요로 이월
8	공공시설물 공모전	27,000	-	95.7	-	-	1,169	4.3	• 집행잔액
9	대중교통안전정보체계디자인개발	10,000	-	81.5	-	-	1,848	18.5	• 용역 낙찰차액(14,469천원) 및 일상방비 집행잔액(2,736천원) 기타보상금 집행잔액(1,280천원)

-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사업의 집행잔액은 매년 반복되는 원인에 따라 발생하고 있으므로, 사업계획시 집행잔액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이를 반영한 예산편성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- 특히 2015년 결산검사의견서<sup>4)</sup>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재공고기 간을 거쳤음에도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체결되는 수의계약이 증가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됨.

---

4) 2015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검사의견서 p.289 참조